



# 문화체육관광부



수신 종교단체 대표  
(경유)

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

1.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0.1.)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 3단계)를 유지하며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가. 적용기간: 2021. 10. 4.(월) 0시 ~ 2021. 10. 17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: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·도\*

\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적용단계

- 수도권: 거리두기 4단계
- 수도권 외 지역: 거리두기 3단계
- ※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·군·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- ※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
- 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·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-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: 1, 2, 3그룹, 기타시설(종교시설 포함), 고위험 사업장
- 법적근거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
- 조치 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(붙임)

3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 귀 단체에서는 소속 종교시설 및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특히 종교시설 내 거리두기 및 참여인원 준수, 소모임 및 식사 금지, 코로나19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
2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3.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4.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5.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행정사무관

손문희

종무1담당관

강성태

전결 2021. 10. 1.

협조자

시행 종무1담당관-3338

(2021. 10. 1.)

접수

우 61485

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

/ <http://mcst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2317

팩스번호 044-203-3462- / [smh0828@korea.kr](mailto:smh0828@korea.kr)

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